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제정 2009. 8. 19. 행정안전부고시 제2009-185호
개정 2010. 6. 24. 행정안전부고시 제2010- 40호
개정 2012. 10. 10. 행정안전부고시 제2012- 44호
개정 2013. 6. 28. 안전행정부고시 제2013- 18호
개정 2014. 11. 25. 행정자치부고시 제2014- 1호
개정 2016. 6. 28. 행정자치부고시 제2016- 20호
개정 2017. 7. 26. 행정안전부고시 제2017- 1호
개정 2017. 12. 29. 행정안전부고시 제2017- 26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50조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전자정부서비스의 호환성 확보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정의 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정부법」 및 동법 시행령을 따른다.

1. “호환성”이란 서비스 이용자 단말기(PC, 모바일기기 등)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이 다른 경우에도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웹페이지”란 인터넷을 통해 텍스트, 그림, 영상, 음성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웹브라우저상의 문서를 말한다.
3. “웹사이트”란 특정 서비스를 위해 구성된 웹페이지의 집합체를 말하며, 지침 제2조 7호의 모바일 웹을 포함한다.
4. “웹브라우저”란 웹페이지를 해석하여 서비스 이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5. “웹표준”이란 국제 표준화 기구(ISO, W3C 등)에서 서술하고 정의하는 공식 기술표준을 말한다.

6. “비표준 기술”이란 웹표준을 준수하지 않은 기술을 말한다.
7. "모바일 웹(Web)"이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브라우저에 최적화된 웹페이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전자정부서비스를 신규 개발, 개선, 유지보수 및 운영하는 업무수행에 적용된다.

제4조(웹사이트 호환성 확보)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를 위한 웹사이트를 신규 개발하는 경우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 동등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를 위한 웹사이트를 개선, 유지보수 및 운영하는 경우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 동등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웹브라우저의 종류는 해당 전자정부서비스를 신규 개발, 개선, 유지보수 및 운영하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제5조(웹표준 준수)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를 위한 웹사이트를 신규 개발, 개선, 유지보수 및 운영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웹 표준 기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웹페이지의 문법을 선언하고, 선언한 문법을 올바른 방식으로 구현하여야 한다.
2. 웹페이지에서 문자를 부호화하는 방식은 UTF-8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술적 제약 및 서비스 특성으로 인해 다른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UTF-8에 준하는 수준으로 한글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웹페이지의 시각적 속성(크기, 색채, 배치, 정렬 및 여백 등)은 국제

기술표준(CSS표준)을 활용하여야 한다.

4. 웹페이지를 동적으로 구성하고 제어하는 기능은 국제 기술표준 (DOM표준, ECMA-262표준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5. 웹표준 신기술(HTML5 등)을 사용할 경우 웹사이트 호환성을 확보 하여야 한다.

제6조(비표준 기술 제거)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개발, 개선, 유지보수 및 운영하는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하여 비표준기술 제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비표준기술 제거 추진현황과 실적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서비스 수준 진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을 대상으로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진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진단은 별표 1 및 별표 2를 따른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서비스 수준 진단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웹표준 준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개발된 전자정부서비스 웹사이트를 위한 개선 및 유지보수 및 운영하는 경우 제5조의 웹표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자정부서비스 웹 호환성 진단표

구 분	진 단 지 표	진 단 기 준	진 단 방 법
1 웹표준 문법 준수	1-1 표준 (X)HTML 문법 준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3C Markup Validator에서 출력된 오류의 개수에 따라 감점 ※ HTML5의 경우 Nu Html Checker로 자동전환 	W3C Markup Validator
	1-2 표준 CSS 문법 준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3C CSS Validator에서 출력된 오류의 개수에 따라 감점 ※ CSS의 경우 Level 3으로 진단 	W3C CSS Validator
2 웹호환성 확보	2-1 기능 호환성 확보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라우저 부가 기능을 이용해서 해당 페이지 내에 사용된 Javascript 오류 및 DOM 경고 발생시 감점 • Javascript가 의도한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되는지 점검하여 비정상적 동작에 대해 감점 	브라우저 부가 기능, 크로스 브라우저 테스트 준용
	2-2 화면표시 호환성 확보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 화면표시가 동등하게 구현되었는지 여부 확인 ※ 웹브라우저별 특성에 의한 차이(폰트, 픽셀 등)는 예외로 함 	크로스 브라우저 테스트 준용
3. 비표준 기술제거	3.1 비표준 기술제거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웹사이트에서 비표준 기술(액티브X 등)사용 여부 점검 ※ 개인정보보호, 보안 등을 위해 사용하는 비표준 기술(액티브X, EXE 등)을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 ※ 웹 표준이 아닌 방식으로 메뉴, 동영상 등을 위해 사용하는 멀티미디어(플래시, 실버라이트, 자바 애플릿, 미디어플레이어 등)를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 	수동평가
	3-2. 최신 웹 표준기술 사용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신 웹표준 기술(HTML5) 사용 여부 점검 ※ 최신 웹표준 기술을 활용하여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 않을 경우 감점 	수동평가

[별표 2]

전자정부서비스 모바일 웹 호환성 진단표

구분	진단 지표	진단 기준	진단 방법
1. 웹 표준 문법 준수	11 표준 (X)HTML 문법 준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W3C Markup Validator에서 출력된 오류의 개수에 따라 감점 ※ HTML5의 경우 Nu Html Checker로 자동전환 	W3C Markup Validator
	12 표준 CSS 문법 준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W3C CSS Validator에서 출력된 오류의 개수에 따라 감점 ※ CSS의 경우 Level3로 진단 	W3C CSS Validator
2. 웹 호환성 확보	21 기능 호환성 확보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바일 웹브라우저 부가 기능을 이용해서 해당 페이지 내에 사용된 Javascript 오류 및 DOM 경고 발생 시 감점 Javascript가 의도한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되는지 점검하여 비정상적 동작에 대해 감점 	브라우저 부가 기능, 크로스 브라우징 테스트 준용
	22 화면표시 호환성 확보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모바일 웹브라우저에서 화면표시가 동등하게 구현되었는지 여부 확인 ※ 모바일 웹브라우저별 특성에 의한 차이(폰트, 픽셀 등)는 예외로 함 	크로스 브라우징 테스트 준용
3. 비표준 기술제거	31 비표준 기술사용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바일 환경(HW, SW)이 다른 경우에도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감점 ※ 액티브X, 실행파일(EXE)을 모바일 웹사이트에서 사용 시 감점 모바일 환경(HW, SW)이 다른 경우에도 동등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감점 ※ 플래시, 플렉스, 실버라이트, 미디어플레이어 등을 사용할 경우 감점 	수동 평가
	32 최신 웹 표준기술 사용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신 웹표준 기술(HTML5) 사용 여부 점검 ※ 최신 웹표준 기술을 활용하여 모바일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 않을 경우 감점 	수동 평가
	41 중첩 테이블 사용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페이지 내 중첩 테이블 사용 시 다양한 모바일 웹브라우저에서 화면표시 오류 발생 여부 점검 	크로스 브라우징 테스트 준용
4. 모바일 호환성 확보	42 프레임 사용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frameset 또는 iframe 사용 시 다양한 모바일 웹브라우저에서 화면표시 오류 발생 여부 점검 	크로스 브라우징 테스트 준용